##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35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송석준·고동진·김선교

이종배 · 김미애 · 박정하

조경태 • 이헌승 • 최형두

박덕흠 • 이종욱 • 윤상현

성일종 · 김성원 의원

(14위)

####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임.

이에 12.29.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규 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또한,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이전·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항시설의 정의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다목).
- 나.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전담인력 및 장비 등을 운용·설 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의5).
- 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업무와 구성방법 및 운영기 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56조의4).
- 라.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에 대한 이전명령, 이전 시 보 상, 해당 환경과 시설이 있는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협의 매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6조의5).
- 마. 조류를 유인할 수 있어 금지된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조류탐지레이더, 열화상카메라 등 조류 퇴치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5(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 전담인력 및 장비 등)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각 공항의 운영자는 매년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계획의 수립, 분석,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 3.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에 관한 사항
  - 4. 공항과 공항주변의 조류의 서식지, 종류, 수량, 이동상태 및 습성,

계절별 추이 등

- 5. 항공기 이착륙 횟수와 항공기의 종류, 운항시간대 등의 항공기의 운항사항
- 6.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의 유인요소와 이에 대한 관리
- 7.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의 위험요소
- 8. 조류의 통제방법 및 수단
- 9. 계획에 대한 평가
- 10.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종사자 교육훈련
- 11. 기타 조류충돌예방활동과 관련한 사항
- ③ 제1항의 전담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각 공항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조명탄 등과 같은 공항시설 및 항공등화를 운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 및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6조의4 및 제5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 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공 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항공사(국적사와 외항사), 공군부대, 조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과 같다.
-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 2. 조류와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예방 방법 개발,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력의 배치 상황(주간 및 야간)
- 3. 제31조의5에 따른 계획의 검토 및 시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
- 4. 기타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④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6조의5(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에 따른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해당 환경의 복구 및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의 복구 및 시설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소유

자나 사용권을 가진 자과 협의하여 그 복구와 이전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와 건물 또는 그 토지와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소유자나 사용권을 가진 자와 협의하여 매수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제3항에 따른 매수와 사용에 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7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조류탐지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퇴치를 위
	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u>지원시설</u>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31조의5(조류충돌 위험관리 계
	획, 전담인력 및 장비 등)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항공기
	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
	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
	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 고,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각 공항의 운영자는 매년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계획의 수립, 분석,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 료의 수집과 관리
- 3.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관한 사항
- 4. 공항과 공항주변의 조류의서식지, 종류, 수량, 이동상태및 습성, 계절별 추이 등
- 5. 항공기 이착륙 횟수와 항공기의 종류, 운항시간대 등의항공기의 운항사항
- 6.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 의 유인요소와 이에 대한 관 리
- 7.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의 위험요소
- 8. 조류의 통제방법 및 수단

9. 계획에 대한 평가

- 10.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 종사자 교육훈련
- 11. 기타 조류충돌예방활동과 관련한 사항
- ③ 제1항의 전담인력을 운영하 기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 ④ 각 공항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조명탄등과 같은 공항시설 및 항공등화를 운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6조의4(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각 공항의 지방항공 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 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 으로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

<신 설>

- 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공 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 위원회는 지방항공청, 공항운영 자, 관할 행정기관, 항공사(국 적사와 외항사), 공군부대, 조 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는 다음과 같다.
-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 2. 조류와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예방 방법 개발, 조류 충 돌예방 전담인력의 배치 상황 (주간 및 야간)
- 3. 제31조의5에 따른 계획의 검

   토 및 시행에 대한 적정성 검

   토
- 4. 기타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④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을 위한 전

<신 설>

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 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 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56조의5(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 등)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 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등은 제56조제5항에 따른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해당 환경의 복구 및 시설의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의 복구 및 시설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소유자나 사용권을 가진 자과 협의하여 그 복구와 이전에 드 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 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 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5항에 따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 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 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와 건 물 또는 그 토지와 건물에 부 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소유 자나 사용권을 가진 자와 협의 하여 매수 또는 사용할 수 있 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제3항에 따른 매수와 사용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 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 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